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6. 12 선고 2023가단129702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경

변 론 종 결 2024. 6. 5.

판 결 선 고 2024. 6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,031,322,464원과 그중 30억원에 대하여 2023. 4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(다만, 보증한도금액인 36억원의 범위 내에서만)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<청구원인>에 나오는 바와 같다(그중 “채권자”는 원고를, “채무자”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)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1항 본문)

판사 박관근

청 구 원 인

1. 채무자 C 주식회사는 채무자 B 연대보증인(보증한도 3,600,000,000원)으로 아래와 같이 대출 실행하면서 만일 지정된 상환일 또는 납입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최고 연 15.00%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.

아 래

(2023.04.17. 현재, 단위: 원)

번 호	대출실행일	대출금 (대출과목)	만기일	이자율 (%)	연체일	대출잔액금 (미수이자금)
1	2023.01.11.	3,000,000,000 (기업일대)	2023.07.11	MOR3 + 5.41%	2023.04.11.	3,000,000,000 (31,322,464)
청구금 총합계 : 3,031,322,464원					원금합계 이자합계	3,000,000,000 (31,322,464)

2. 위와 같이 채무자는 위 대출금이 연체 중에 있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, 2023.04.17. 현재 미상환 대출원리금 합계 금 3,031,322,464원(원금합계 3,000,000,000원 + 이자합계 31,322,464원)이 남아있으나 채무자는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.
3. 따라서 채권자 은행은 채무자로부터 위 청구 취지와 같은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은 것입니다.

